



제2905호 2023. 7. 14.(금)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808호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 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0호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 1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1호 토지 세목(변경) 고시(소규모 구조개선사업(진안 신양)) ..... 1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3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무주군) ..... 16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5호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6호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3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완주역사복원 추진위원회) .....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2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군산YWCA) .....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4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익산YWCA) ..... 4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5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남원YWCA) ..... 4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9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4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9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등 변경 등록공고 ..... 4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00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 4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 4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09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 5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13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 5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0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사단법인 부안군낙시어선협회) ..... 53

**지시사항**

- 2023. 7. 6.(목)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54

##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새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7
- 익산시 고시 제2023-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62
- 익산시 공고 제2023-19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32호, 소로3-83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65
- 익산시 공고 제2023-19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공고 ..... 71
- 정읍시 고시 제2023-10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75
- 정읍시 공고 제2023-10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77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3. 7. 14.

전라북도 훈령 제1808호

###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지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을 “사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이내”를 “4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각 분야별”을 “각 분야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사학위이상”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20년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일전”을 “2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개최하고자 하는”을 “개최하려는”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의개시 예정시간”을 “회의 개시 예정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회”를 “직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차

기”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원안의결”을 “원안 의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를 “회의 시마다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규정에 의한다”를 “그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산지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 -----.</p>
<p>제2조(기능)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제2조(기능) ----- ----- 각 호-----.</p>
<p>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에 관한 사항</p> <p>2. (생 략)</p> <p>3. 「산지관리법」 및 제1호·제2호에 따른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은 “별표”와 같다.</p>	<p>1. ----- ----- 사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p> <p>2. (현행과 같음)</p> <p>3. ----- 위원회-----.</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①----- ----- 40인 이내-----.</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 ----- 1인 이상 -----.</p>
<p>1. 임명직 위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농축수산 식품국장, 건설교통국장</p>	<p>1. ----- 위원: ----- -----</p>
<p>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분야별로 1인 이상으로 한다.</p>	<p>2. ----- 각 목----- ----- 각 분야별-----.</p>
<p>가. (생 략)</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p>

<p>사람</p> <p>다.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라. 산림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사무관이상으로 퇴직한 사람</p> <p>마. (생 략)</p> <p>바.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내 임업단체의 장으로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2)산림경영인협회 전북지회장 또는 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 3)전북 지역산림조합장중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p> <p>사.·아. (생 략)</p> <p>제4조(임기) ① (생 략)</p> <p>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 략)</p> <p>③도지사는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2. (생 략)</p> <p>②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8조(회의) ① (생 략)</p>	<p>--</p> <p>다. 석사학위 이상-----</p> <p>-----</p> <p>라. ----- 20년 이상 -----</p> <p>-----</p> <p>마. (현행과 같음)</p> <p>바. -----</p> <p>----- 어느 하나-----</p> <p>-----</p> <p>-----</p> <p>-----</p> <p>-----</p> <p>사.·아.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p> <p>제6조(위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p> <p>----- 해당 위원-----.</p> <p>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각 호-----</p> <p>-----</p> <p>1.·2. (현행과 같음)</p> <p>②-----</p> <p>----- 2일 전-----</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	---

②회의개최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개최하고(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심의안건이 없는 달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생략)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에 개최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생략)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생략)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의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②-----  
-----  
----- 그렇지 않다. -----  
-----.

③----- 개최하려는 -----  
----- 3일 전 -----  
-----  
----- 그렇지 않다.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의 진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 개시 예정 시간 -----  
-----  
-----.

③----- 직전 -----  
-----.

제10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제12조(위원회의 의결)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의행 여부 -----.

3. ----- 다음 -----  
-----.

4. -----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회의록 등)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현지조사)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한 경우)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을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 원안 의결-----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등) ①-----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  
-.

1. ~ 7. (현행과 같음)

②-----  
----- 그에 따른다

제14조(현지조사) -----  
----- 과 반수 이상 -----  
-----.

제17조(수당 등) ①-----  
-----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②제15조에 따라 -----  
-----  
-.

③제14조에 따라 -----  
-----.

제18조(서식) -----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9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4.  
전라북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km)
기정	지방도	701호	정읍 김제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일원	3,835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253-3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284-4	-	0.361
변경					6,192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7. ~ 2025. 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공항공청(063-280-4404)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37)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9	보조 간선 도로	361	정우면 수금리 253-3	정우면 수금리 284-4	일반 도로	-	-	지방도 701호
기정	소로	2	5	9*9.5	보조 간선 도로	361	정우면 수금리 253-3	정우면 수금리 284-4	일반 도로	-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5	소로 2-5	○ 일부구간 폭원변경 - 폭원 : 9m→9.5m	○ 정읍 수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 3. 도로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라북도(도로공항철도과)에서 열람 가능

## 【 불 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편 입 용 지 조 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토지대장 상 소유자	
	읍면	동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총계		62필지			77,610	3,835	6,192	증)4,207		
1	정우	수금	253-3	도	50	16	16	-	253	배승제
2	정우	수금	253-4	도	203	74	74	-		전라북도
3	정우	수금	253-2	도	93	46	46	-	253	배승제
4	정우	수금	259-1	도	23	23	23	-	259	최병인
5	정우	수금	265-3	도	23	23	23	-		전라북도
6	정우	수금	265-2	도	20	20	20	-		김섭만
7	정우	수금	1032	도	9610	334	437	증)103		국(건설부)
8	정우	수금	260-1	도	40	40	40	-	등기 없음	김수규, 김남수
9	정우	수금	264-1	전	370	-	23	증)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1번길 3 나동 비01호(가좌동,배성빌라)	김용만
10	정우	수금	264-3	도	13	13	13	-		오현근
11	정우	수금	264-4	도	53	53	53	-		전라북도
12	정우	수금	264-2	도	56	56	56	-		오현근
13	정우	수금	261-1	도	40	40	40	-	199	김한규
14	정우	수금	263-4	도	147	147	124	감)23		전라북도
15	정우	수금	263-2	도	106	106	106	-	197	김오복
16	정우	수금	263-3	도	165	165	165	-	197	김오복
17	정우	수금	299-5	도	165	165	72	감)93		전라북도
18	정우	수금	299-1	임	22583	-	5	증)5	정읍시 정우면 습금리 197	김혜김씨여독공과중중
19	정우	수금	299-6	임	197	-	4	증)4		정읍시
20	정우	수금	268-3	도	53	53	53	-		김병욱
21	정우	수금	268-2	도	145	145	145	-		김병욱
22	정우	수금	268-1	전	20	20	20	-	180	정영문
23	정우	수금	270	대	347	-	347	증)347	180	정영문
24	정우	수금	270-1	도	10	10	10	-		전라북도
25	정우	수금	272-11	도	5	5	5	-		전라북도
26	정우	수금	272-8	도	103	103	103	-		국(국토교통부)
27	정우	수금	272-1	담	990	111	548	증)437	564	정영문
28	정우	수금	272-2	도	132	132	132	-	정읍군 신태인면 구석리 76	강갑수
29	정우	수금	278-1	전	45	22	45	증)23	정읍시 신태인읍 구사5길 81-4	송미래
30	정우	수금	278-2	도	9	9	9	-		김진권
31	정우	수금	280	전	2385	-	366	증)366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7번길 30(비래동)	박정국
32	정우	수금	278-4	도	1	1	1	-		전라북도
33	정우	수금	280-2	도	12	-	12	증)12		전라북도
34	정우	수금	280-1	도	36	-	36	증)36		국(국토교통부)

편 입 용 지 조 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토지대장 상 소유자	
	읍면	동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35	정우	수금	산3-2	철	3530	106	140	증)34		국(국토교통부)
36	정우	수금	283-2	도	66	6	5	감)1		국(국토교통부)
37	정우	수금	283-4	철	1179	442	817	증)375		국(국토교통부)
38	정우	수금	283-5	도	93	1	67	증)66		국(국토교통부)
39	정우	수금	284-4	철	2763	153	332	증)179		국(국토교통부)
40	정우	수금	277-2	도	112	112	102	감)10		국(국토교통부)
41	정우	수금	277-5	도	31	11	31	증)20		국(국토교통부)
42	정우	수금	277-4	도	136	69	-	감)69		국(국토교통부)
43	정우	수금	277-3	전	2	2	2	-	203	윤봉학
44	정우	수금	278-5	도	60	60	60	-		국(국토교통부)
45	정우	수금	278-3	도	50	30	-	감)30		국(국토교통부)
46	정우	수금	272-3	도	317	173	69	감)104		국(국토교통부)
47	정우	수금	269-2	도	23	23	21	감)2		배현제
48	정우	수금	269-1	도	17	17	17	-		배현제
49	정우	수금	산6-4	도	941	276	581	증)305		진라북도
50	정우	수금	산6	임	28819	-	222	증)222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97	김해김씨려득공파종중
51	정우	수금	262-1	도	26	26	26	-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88, 202	김달천, 김남수
52	정우	수금	262-4	도	15	15	15	-		진라북도
53	정우	수금	262-3	대	124	-	46	증)46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97	김해김씨려득공파종중
54	정우	수금	262-2	도	40	-	40	증)40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188	김달천
55	정우	수금	261-3	대	116	-	36	증)36	236	배형진
56	정우	수금	261-2	도	93	93	93	-	126	김병환
57	정우	수금	260-3	전	238	-	8	증)8	236	배형진
58	정우	수금	260-2	도	126	126	126	-		김수규, 김남수
59	정우	수금	259-2	도	53	53	53	-	259	은태승
60	정우	수금	255-2	도	89	89	89	-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255	김수인
61	정우	수금	255-1	도	20	20	20	-		김수인
62	정우	수금	260-4	대	281	-	2	증)2	정읍시 정우면 금남길 13-8	박해덕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0호

###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된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 1. 지역, 지구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2.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 분	위 치		편입현황		비 고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39-5번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7-121번지	24	10,935	

※ 지형도면: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열람하여야 함)

- 3. 지형도면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063-454-3603)
  - 익산시 미래농업과 (063-859-5755)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063-440-5714)
- 4. 첨부서류
  -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 구역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지형도면 토지의 필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대야면 광교리	7-121	구	174	174	익산시	-				
2	대야면 광교리	7-122	구	37	37	익산시	-				
3	대야면 광교리	7-123	구	94	94	익산시	-				
4	대야면 광교리	7-124	구	111	111	익산시	-				
5	대야면 광교리	7-125	구	116	116	익산시	-				
6	대야면 광교리	7-126	구	99	99	익산시	-				
7	대야면 광교리	7-127	구	46	46	익산시	-				
8	대야면 광교리	7-128	구	28	28	익산시	-				
9	대야면 광교리	7-129	구	76	76	익산시	-				
10	대야면 광교리	7-130	구	107	107	익산시	-				
11	대야면 광교리	7-131	구	69	69	익산시	-				
12	대야면 광교리	7-132	구	80	80	익산시	-				
13	대야면 광교리	7-133	구	116	116	익산시	-				
14	오산면 신지리	275-1	잡	815	815	국(국세청)	-				
15	오산면 신지리	638-56	도	3,364	3,364	익산시	-				
16	오산면 신지리	639-5	답	4,289	4,289	국 (기획재정부)	-				
17	오산면 신지리	663-67	잡	751	751	국 (기획재정부)	-				
18	오산면 신지리	751-26	도	75	75	국(건설부)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9	오산면 신지리	751-28	도	155	155	국(건설부)	-				
20	오산면 신지리	751-29	도	65	65	국(건설부)	-				
21	오산면 신지리	751-30	도	71	71	국(건설부)	-				
22	오산면 신지리	822-49	구	111	111	익산시	-				
23	오산면 신지리	822-50	구	48	48	익산시	-				
24	오산면 신지리	823-10	구	38	38	익산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1호

**토지 세목(변경) 고시**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진안 신양))**

전라북도 고시 제2023-129(2023. 5. 19.)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국지도 55호선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진안 신양)”에 대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 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1. 사업명 :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진안 신양)
2.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3. 노선명 : 국지도 55호선
4. 사업기간 : 2023. 6월 ~ 2025. 7월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따로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

공사명 :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진안 신양)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1	주천면 신양리	392-1	392-1	답	1,550	328		박**			
2	주천면 신양리	391-2	391-2	도	3,022	596		전라북도			
3	주천면 신양리	391-3	391-3	임	7	7		김**			
4	주천면 신양리	산1-3	산1-3	임	956	683		전라북도			
5	주천면 신양리	390-1	390-1	도	155	21		전라북도			
6	주천면 신양리	산1-1	산1-4	임	40,997	382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506-1	송**			
7	주천면 용덕리	산154-1	산154-5	임	79,538	191	천안시 쌍용동 386-6 극동@3동/503	유* 외5			
8	주천면 용덕리	산154-4	산154-6	임	1,178	415	천안시 쌍용동 386-6 극동@3동/503	유* 외5			
9	주천면 용덕리	산154-3	산154-3	임	3,482	1,310		전라북도			
10	주천면 용덕리	810	810	도	645	33		전라북도			
11	주천면 용덕리	806	806	천	161,209	166		국토해양부			
12	주천면 용덕리	201-2	201-2	천	382	6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3호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무주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무주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3	무주군	하장백지구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516번지 일원	

###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무주군	계	322	235,640	320	235,640	△2 (0.6%)	0 (0.0%)	
	하장백지구	322	235,640	320	235,640	△2 (0.6%)	0 (0.0%)	

⑤ 변경사유 : 토지이동정리로 인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필지수 변경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무주군청 김윤아(063-320-2724)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5호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전라북도지사

##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4)
-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지방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도지사가 임명
  -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함
- 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인센티브) 배분기준을 특조금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6조제2항제3호)
-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 다.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2항)
-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특조금을 교부받거나 받으려 한 때, 민간지원 보조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함
- 라. 정보공개 범위 확대(안 제12조)
- 시군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교부액 등을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관계부서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 행정과, 여성 청소년과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7. 14. ~ 2023. 8. 3.(20일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3.(목)까지 전라북도지사(참조 :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 예산과

1) 주 소 :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효자동)

2) 전 화 : 063-280-2167 (FAX : 063-280-2129)

3) E- mail : pin071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예산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80-2167)

붙임 1.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 1****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북도조례 제 호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을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2항 중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배분할”을 “교부할”로,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를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붙임 2

## 신 · 구조문 대비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② (생략)</p> <p>③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p> <p>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생략)</p> <p>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p> <p>1. 2. (생략)</p> <p>3. <u>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u></p> <p>4. 5. (생략)</p> <p>③ ~ ⑥ (생략)</p> <p>&lt;신 설&gt;</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 ----- ----- -----.</p> <p>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u> -----</p> <p>4. 5.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p>

<신 설>

<신 설>

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 (생략)

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 1.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 5. 시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1. 시·군명
- 2. 교부일자
-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 4. 교부액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1.8.10.)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3. 작성자

- 예산과 지방행정6급 배홍균(280-2167)

**붙임 4****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④ 삭제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조례 일부개정 전문(안)**

##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평을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써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당해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의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전라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전라북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교부금 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 징수 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 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 또는 감액한 조정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각각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리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6호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전라북도지사

###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 이유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2023. 03. 03.)에 따라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 나. 협의회 구성 시 성별 고려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항)
- 다. 일부 문구 정비(제명 및 자구 등 수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3. 7. 14. ~ 8. 3.(20일간)

####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8.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예산과(전화 : 063-280-3016, FAX : 063-280-21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예산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280-3016)

**5.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제”를 “예산제도”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산제”를 “예산제도”로,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등) ①·② (생략)</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관 실·국별로 15명 내외로 <u>구성·운영한다.</u></p> <p>1. ~ 5. (생략)</p> <p>제3조(협의회의 위원 임기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 <u>17조</u>를 준용한다.</p> <p>② ~ ④ (생략)</p>	<p><u>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예산제도</u> ----- ----- -----.</p> <p>제2조(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구성</u> ----- <u>·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의 위원 임기 등) ① ----- ----- ----- <u>예산제도</u> ----- <u>제16</u> <u>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b>붙임 1</b>	<b>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b>
-------------	----------------------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 개정으로 추가 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행정6급 소영웅(063-280-3016)

**붙임 2****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3. 3.>]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완주역사복원 추진위원회)**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허가 번호 : 제2023-27호
2. 허가연월일 : 2023. 06. 28.
3. 법인명 : 사단법인 완주역사복원 추진위원회
4. 대표자 : 나유인, 마완식
5.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6-7
6. 설립목적 : 일제에 의해 분리된 완주, 전주 양지역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복원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익의 대변, 향후 통합도시의 상생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2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군산YWCA)**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허가 번호 : 제2023-24호
2. 허가연월일 : 2023. 06. 27.
3. 법인명 : 사단법인 군산YWCA
4. 대표자 : 우원경
5.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6 5층
6. 설립목적 : 군산지역의 시민단체로서 모든 시민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실현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및 시민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의, 평화,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4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익산YWCA)**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허가 번호 : 제2023-25호
2. 허가연월일 : 2023. 06. 27.
3. 법인명 : 사단법인 익산YWCA
4. 대표자 : 윤명희
5.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6. 설립목적 :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시민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며 시민운동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정의, 평화,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5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남원YWCA)**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허가 번호 : 제2023-26호
2. 허가연월일 : 2023. 06. 27.
3. 법인명 : 사단법인 남원YWCA
4. 대표자 : 유 정 이
5.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동림로 45
6. 설립목적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며, 폭력과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과 평화가 보장되며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 화합하는 사회를 건설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90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자치도 추진단 공인 정비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7월 14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특별자치도추진단	전라북도총괄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총괄지원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총괄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특례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특례정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특례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자치제도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자치제도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자치제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96호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등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4.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7-1-전라북도-92호
2. 단체명칭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84, 2층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 최영순
  - 생년월일 : 1959.7.17
  - 주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원반교길 12-1
5. 주된 사업
  - 아동·청소년 및 지역복지사업
  - 지역사회 아동의 통합적 교육 및 보호사업
  -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6. 변경 내용
  - 대표자 (당초) 장철규 (변경) 최영순
7. 등록(변경)일자 : 2023. 7. 5.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00호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1. 허가번호 : 전라북도 제2005-30호
2. 법인명 :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
4. 대표자 : 임상규(1966. 09. 10.)
5. 주된사업
  - 여성인력 개발 및 교육 사업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 여성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 건강한 가족육성 양성평등, 여성단체지원 사업
6. 변경사항 : 제1조(목적), 제3조(사업),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 \* 기관명, 기관장 등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부칙 ①항, ③~⑥항
7. 변경일자 : 2023. 7. 10.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06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위한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전라북도지사

###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내 용	비 고
(주)세진건설 (이영*)	건축공사업 (14-0455)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903	시정명령 조치 미이행에 따른 처분의 내용 통지 및 청문 출석 요구	

2. 공시송달기간 : 2023. 7. 14. ~ 7. 29(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처분의 내용 통지 및 청문에 출석 요구

5.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 8. 4.(금) 14:00

나. 장 소 : 전북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6. 출석시 지참자료 :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을 대리인 참석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7. 청문실시 통지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 청문실시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지역정책과(☎063-28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2. 당사자	명칭(대표)	(주)세진건설 (이영*)		업종명	건축공사업(14-0455)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9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b>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기한 내 시정명령 조치 미이행</b>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6417(2022.12.21.)호,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708(2023.1.17.), 2054(2023.2.14.), 6613(2023.5.17.), 7252(2023.6.2.)호 관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b>건설업 영업정지</b>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 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시정명령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호. <b>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b>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호. <b>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b>				
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의견 제출처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의견 제출기한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번호 280-3419
		<b>청문 종결 전까지</b>			
	청문	일시	<b>2023. 8. 4(금) 14:00</b>		
청문장소		전북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설 사이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북도 청문주재관		
		성명	장우석		

**전라북도지사**

< 청문 사유의사항 >

-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09호

##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개발업 말소된 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 폐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14일

상호 및 대표자	말소연월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주)아이에스건설 (이경열)	2023.7.10.	전북210004 (210111-01676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고을로2길 104호	경영상 이유

.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13호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2021-28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무주문화원
3.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최북미술관 1층
4. 대 표 자 : 맹갑상
5. 설립목적 :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
6. 변경 허가사항

현 행	개정안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 부터 발생한 <u>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u> <u>잡수입</u> 으로 한다.	제34조(수입금) ① 본원의 수입 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 부터 발생한 <u>과실,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u> <u>잡수입</u> 으로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본원해산) ② 본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본원해산) ② 본원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u>

7. 변경 허가일자 : 2023. 7. 7.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0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사단법인 부안군낙시어선협회)**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기 설립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요청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전라북도지사

- 1. 허가번호 : 제2023-19호
- 2. 법인명 : 사단법인 부안군낙시어선협회
- 3.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길 3-1
- 4. 대표자 : 이순복
- 5. 설립목적 : 부안 및 인근 수역을 이용한 바다낚시 및 해양관광발전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발전, 수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
- 6. 취소사유 : (사)부안군낙시어선협회 내부사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청

##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7. 6.(목) 16: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49	도·시군 정책협의회 시 시군별 정책 우수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정책협의회 개최 시 각 시·군의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타 시군에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2~3건 정도를 선정해 시장·군수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p>
2023-50	조선업 필요 인력 수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이후 생산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인력만 있다면 군산조선소 생산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므로,</li> <li>○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하반기 필요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이 제때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방안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주력산업과)</p>
2023-51	LH-도 협의를 통한 사업발굴 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li> <li>○ 특히 우리도에 꼭 필요함에도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다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 중 우리도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 등을 체크하여 LH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지역정책과)</p>
2023-52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 확보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에서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였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 총391개 사업, 24.6조원(올해 23.2조원 대비 5.9% 증가)</li> <li>○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측·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우리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하여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안전정책과)</p>
2023-53	미신고 영아 속출에 따른 도 차원 대응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문제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음.</li> <li>○ 우리도 현황 및 정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산부인과 등과 미리 협조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신고 영아 문제에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여성가족과)</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54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행 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8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택시업계 경영난 심화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상되었으므로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택시업계에서도 결의대회 등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도 요금인상 홍보 등 안내와 함께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교통정책과)</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독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의무구매해야 하나 6월말 현재 0.59%에 불과하므로,</li> <li>- 실국장들은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장애인복지과/협조 : 전실국)</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향사랑 기부자 사후 관리 철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감사편지를 보내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li> <li>- 기부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지인 등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대응 철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해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기업유치추진단)</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24년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 대응 총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도 국가예산 기재부 1차 심의가 7.16.으로 연기되고, 사업수 기준 30%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므로,</li> <li>- 부처 및 기재부 활동을 통해 소관 국가예산 변동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실국)</p> </li> </ul>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제도·시책 홍보 및 대응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월 30일 기재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시책 186건을 발표하였음.</li> <li>-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고,</li> <li>- 민생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비 지원 사업 등 신청·공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실국)</p>
		<p>○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주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7월 20일경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마지막 점검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과)</p>
		<p>○ 세계잼버리 기간 도-시군 긴급대응체계 구축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우리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긴장감을 갖고 대회 준비에 함께 임해주길 바람.</li> <li>- 아울러, 대회 기간 다양한 영외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문제 발생 시 도를 포함해 각 시군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협조 : 전실국)</p>
		<p>○ 하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대응 및 소통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7.14.~7.24.)를 통해 하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되므로 도정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li> <li>-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은 의회와 소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추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3 - 117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새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수송동 70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새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708-9번지 외 9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나. 명 칭 : 새들허브숲 조성사업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면적(㎡)	기 시행		금회 실시계획인가		최 초 결정일
			시 설 명	면적(㎡)	시 설 명	면적(㎡)	
합 계		139,157		63,838		75,319	
새들공원	근린공원	139,157	예술의전당	46,294			건설고525 (67.7.25)
			배드민턴장 등	17,544			
					새들허브숲	75,319	

3.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군산시장(산림녹지과)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순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수송동	702-8	임	1200	12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수송동	702-9	임	922	92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수송동	702-10	임	331	3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수송동	산24-2	임	4388	4388	국(산림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5	수송동	702-11	임	300	3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수송동	산23	임	500	5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수송동	708-10	임	1400	1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수송동	산34	임	1264	1,21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수송동	산22	임	89	8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수송동	702-1	임	4300	43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수송동	702-17	임	81	8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수송동	702-18	임	337	33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수송동	702-2	임	1431	14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4	수송동	708-7	임	1400	1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수송동	708-8	임	1000	10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6	수송동	998	임	1493	1493	군산시의외2인	군산시 시청로 17				
17	수송동	1000	임	270	27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8	수송동	999	임	827	82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9	수송동	708-9	임	1400	14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0	수송동	산33	임	2001	200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1	수송동	708-2	임	3660	36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2	수송동	708-1	임	691	69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3	수송동	962	전	48	4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4	수송동	963	전	526	52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5	수송동	701-4	전	331	3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6	수송동	1004	전	369	3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7	수송동	1001	전	12	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8	수송동	1003	전	180	9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9	수송동	702-5	전	605	60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0	수송동	702-4	전	1960	19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1	수송동	966	전	1273	12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2	수송동	968	전	407	407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33	수송동	967	전	137	13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4	수송동	972	전	347	34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5	수송동	970	전	241	2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6	수송동	971	전	195	195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37	수송동	977	전	440	440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38	수송동	976	전	631	6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9	수송동	974	전	109	109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0	수송동	973	전	137	137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1	수송동	991	전	433	433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2	수송동	978	전	274	274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3	수송동	980	전	406	406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4	수송동	982	전	131	1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5	수송동	702	전	317	31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6	수송동	702-7	전	1091	109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7	수송동	702-6	전	1207	120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8	수송동	704-1	전	863	86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9	수송동	986	전	309	30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0	수송동	989	전	332	33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1	수송동	702-3	전	469	469	사유지 (황*현)	나포면 주곡리 184				
52	수송동	706	전	664	6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3	수송동	701-2	전	716	7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4	수송동	987	전	27	2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5	수송동	988	전	41	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6	수송동	701-3	전	49	4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7	수송동	993	전	1150	115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8	수송동	983	전	23	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9	수송동	985	전	225	22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0	수송동	984	전	101	10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1	수송동	990	전	754	75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2	수송동	992	전	985	98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3	수송동	981	전	11	11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64	수송동	994	전	264	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5	수송동	995	전	979	97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6	수송동	996	전	2431	24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7	수송동	997	전	257	25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8	수송동	707	전	939	93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9	수송동	969	묘	122	109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70	수송동	975	묘	245	243	국(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71	수송동	979	묘	271	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2	수송동	961	공	4605.6	460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3	수송동	1005	도	156	138	국(농림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74	수송동	965	도	1208	888	국(농림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75	수송동	964	도	64	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6	수송동	788	공	1184.2	8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7	지곡동	산9	임	595	59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8	지곡동	286-5	임	5566	556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9	지곡동	273-10	임	16	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0	지곡동	273-9	임	16	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1	지곡동	273-13	임	7	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2	지곡동	286-7	임	4818	481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3	지곡동	273-1	전	605	60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4	지곡동	286-1	전	1283	128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5	지곡동	286	전	1202	77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6	지곡동	279	답	1987	54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7	지곡동	273-4	대	11	1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8	지곡동	273-3	대	96	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9	지곡동	273-2	대	55	5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0	나운동	126-10	전	1807	22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1	나운동	124-6	전	64	1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2	나운동	126-13	전	203	13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3	나운동	114-21	전	570	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4	나운동	114-23	전	1563	31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5	나운동	127-3	전	1437	33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6	나운동	114-17	도	463	35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읍6로 11				
97	나운동	126-5	도	360	126	국(농수산부)	세종시 다습2로 94				

익산시 고시 제2023-136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7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9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 사업의 명칭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L=442.5m, B=10~15.8m, 면적:3,9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불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공사명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지적 (㎡)	편입지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내용	
1	익산	황등면	790-4	전	17	17	조연*	서울 강서구 화곡동 ***				
2	익산	황등면	789-5	답	64	64	김봉*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황등창조**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3	익산	황등면	789-6	답	1	1	김봉*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황등창조**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	익산	황등면	788-20	답	62	60	익산시					
5	익산	황등면	788-21	전	365	365	익산시					
6	익산	황등면	788-18	전	89	89	재정 경제부					
7	익산	황등면	764-11	전	152	152	익산시					
8	익산	황등면	762-6	대	77	77	익산시					
9	익산	황등면	762-8	전	83	83	익산시					
10	익산	황등면	763-3	전	4	4	김점*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				
11	익산	황등면	763-4	도	3	3	한봉*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				
12	익산	황등면	1739-151	도	38	38	건설부					
13	익산	황등면	1739-150	도	11	11	건설부					
14	익산	황등면	761-16	도	6	6	익산시					
15	익산	황등면	761-14	전	823	823	익산시					
16	익산	황등면	761-12	대	310	310	강숙*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황등농업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	근저당권설정	
17	익산	황등면	761-10	대	168	168	임훈*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익산군농업 ****	이리시 중앙동3 가**	근저당권설정	
18	익산	황등면	761-17	대	202	202	임훈*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익산군농업 ****	이리시 중앙동3 가**	근저당권설정	
19	익산	황등면	761-9	대	33	33	익산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공사명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적 (㎡)	편입 지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0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17	도	72	72	김범*	서울 마포구 대흥동 ***	안양세 무**		압류	
21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1	전	11	11	익산시					
22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2	전	276	276	익산시					
23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21	전	11	11	문병*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				
24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19	전	12	12	익산시					
25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2-7	도	35	35	이한*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				
26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0-30	대	32	32	익산시					
27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16	전	25	25	익산시					
28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0	전	145	145	익산시					
29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15	도	40	40	익산시					
30	익산	황등면 황등리	792-2	도	1	1	익산시					
31	익산	황등면 황등리	243-20	전	221	221	익산시					
32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4	도	92	92	익산시					
33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6	전	23	19	익산시					
34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8	전	37	37	익산시					
35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9	전	730	266	익산시					
36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3	전	14	14	익산시					
37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1	도	493	71	국토교 통부					
38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3	도	112	11	국토교 통부					
39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6	도	93	6	국토교 통부					
40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11	도	1,430	5	익산시					

익산시 공고 제2023-1958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32호, 소로3-83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32호, 소로3-835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7월 14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32호, 소로3-835호)사업
- 사업의 명칭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소로2-832호 : L=207m, B=8m, 면적:1,778m<sup>2</sup>
- 소로3-835호 : L=203m, B=2~5m, 면적:1,068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소로2-832호)

◎ 공사명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 입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2	대	17	8	익산시						
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3	답	498	485	익산시						
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6	답	304	237	익산시						
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0-6	도	13	13	소병*	미등기(토지대장 주소불명)					
5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0-7	천	15	15	소병*	미등기(토지대장 주소불명)					
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0-8	천	10	10	소병*	미등기(토지대장 주소불명)					
7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0-9	도	18	18	소병*	미등기(토지대장 주소불명)					
8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1-6	답	126	126	익산시						
9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1-5	답	2	2	익산시						
10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3-4	도	14	14	국(건설교통 부)						
1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3-2	답	325	325	1/8	소재*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1/8	소재*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5/8	익산시					
							1/16	소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중동로 78, **** (중동, 창원중동유니시 티4단지)				
							1/16	소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 안로3길 68-7, *** (성내동, 원펠리스)	세무 행정 과	서울 특별 시 송파 구 1132	압류	
1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4-4	대	152	152	익산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소로2-832호)

◎ 공사명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 입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4-6	도	9	9	소병*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1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4-7	대	2	2	익산시					
15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3	도	14	14	소병*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1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13	대	125	125	익산시					
17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15	대	17	17	익산시					
18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16	대	26	26	익산시					
19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17	대	9	9	익산시					
20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9	도	9	9	소병*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2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8-5	답	33	33	익산시					
2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9-3	답	6	6	익산시					
2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97-14	답	1	1	익산시					
2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97-15	도	1	1	국(건설교통 부)					
25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70	도	7	7	국(건설부)					
2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71	도	44	44	국(건설부)					
27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72	도	54	54	국(건설부)					
28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74	도	8	8	국(건설부)					
29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68	도	6	6	국(건설부)					
30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69	도	2	2	국(건설부)					
총 계 (소로2-832, 30필지)					1,867	1,778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소로3-835호)

◎ 공사명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 입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10	전	22	22	익산시					
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11	전	12	12	익산시					
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7	도	116	106	익산시					
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12	전	19	19	익산시					
5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7-5	답	6	6	익산시					
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2	대	17	9	익산시					
7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3	답	498	13	익산시					
8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5	대	5	5	익산시					
9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6	답	304	67	익산시					
10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17	도	14	14	소상*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				
1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95-5	임	449	449	3/4	익산시				
							1/8	소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중동로 78, *** (중 동, 창원중동유니시티4 단지)			
							1/8	소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 안로3길 68-7, *** (성내동, 원펠리스)			
1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3-3	도	78	78	익산시					
1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3-7	도	4	4	익산시					
1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3-6	도	31	31	익산시					
15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4-2	도	51	51	소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1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4-4	도	32	32	소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소로3-835호)**

◎ 공사명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 입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5-4	도	44	44	채경*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				
18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5-8	도	49	49	채경*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				
19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2	도	43	43	익산시					
20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7-2	도	7	7	소병*	경성부 안국정 ***				
2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7-4	답	7	7	익산시					
총 계 (소로3-835, 21필지)					1,808	1,068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물건조서(소로2-832호)**

◎ 공사명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물건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3-4	간판	철재	1	식	익산시					
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3-4	감나무		2	주	익산시					
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31-74	감나무		1	주	국(건설부)					
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97-10	감나무		2	주	국(건설교 통부)					
				대추나무		1	주						
				뽕나무		10	주						
				이팝나무		2	주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물건조서(소로3-385호)

◎ 공사명 :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물건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 내용	
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8-7	대문기둥	콘크리트 대리석	4.95	m <sup>2</sup>	익산시					
				전력량제어 기	철재	1	식						
				우편함	철재	1	식						
				간판	철재	1	식						
				보안등	철재	3	식						
				cctv		1	식						
				자연석	화강석	18	m <sup>2</sup>						
				느티나무		4	주						
				히말라야시 다		7	주						
				향나무		2	주						
				이팝나무		2	주						
				유카		1	주						
화단	취퐁나무, 맥문동 등 포함	25	M										
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10	등근단풍		1	주	익산시					
				향나무		2	주						
				사자상		2	식						
3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6-2	단풍나무		2	주	익산시					
4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3-3	단풍나무		1	주	익산시					
				뽕나무		1	주						
5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3-6	울타리	철제차양 막	25	M	채경*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44-2	단풍나무		4	주	소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밤나무		1	주						
				자두나무		1	주						
				감나무		4	주						
				대추나무		1	주						
				두릅		30	M						
7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95-2	단풍나무		13	주	익산시					



익산시 공고 제2023-1961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공고

익산시 공고 제2023-1514호(2023.5.19.)로 열람공고 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에 대한 정정사항(물건조서 누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7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9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호)사업
  - 사업의 명칭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L=442.5m, B=10~15.8m, 면적:3,9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공사명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	편입 지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익산	황등면리	790-4	전	17	17	조연*	서울 강서구 화곡동 ***				
2	익산	황등면리	789-5	답	64	64	김봉*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황등창조** ****	익산시 황등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3	익산	황등면리	789-6	답	1	1	김봉*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황등창조** ****	익산시 황등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	익산	황등면리	788-20	답	62	60	익산시					
5	익산	황등면리	788-21	전	365	365	익산시					
6	익산	황등면리	788-18	전	89	89	재정 경제부					
7	익산	황등면리	764-11	전	152	152	익산시					
8	익산	황등면리	762-6	대	77	77	익산시					
9	익산	황등면리	762-8	전	83	83	익산시					
10	익산	황등면리	763-3	전	4	4	김점*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				
11	익산	황등면리	763-4	도	3	3	한봉*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				
12	익산	황등면리	1739-151	도	38	38	건설부					
13	익산	황등면리	1739-150	도	11	11	건설부					
14	익산	황등면리	761-16	도	6	6	익산시					
15	익산	황등면리	761-14	전	823	823	익산시					
16	익산	황등면리	761-12	대	310	310	강숙*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황등농업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	근저당권설정	
17	익산	황등면리	761-10	대	168	168	임훈*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익산군농업 ****	익산시 중앙동 3가**	근저당권설정	
18	익산	황등면리	761-17	대	202	202	임훈*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익산군농업 ****	익산시 중앙동 3가**	근저당권설정	
19	익산	황등면리	761-9	대	33	33	익산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공사명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적 (㎡)	편입 지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0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17	도	72	72	김범*	서울 마포구 대흥동 ***	안양세 무**		압류	
21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1	전	11	11	익산시					
22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2	전	276	276	익산시					
23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21	전	11	11	문병*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				
24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19	전	12	12	익산시					
25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2-7	도	35	35	이한*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				
26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0-30	대	32	32	익산시					
27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16	전	25	25	익산시					
28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0	전	145	145	익산시					
29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15	도	40	40	익산시					
30	익산	황등면 황등리	792-2	도	1	1	익산시					
31	익산	황등면 황등리	243-20	전	221	221	익산시					
32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4	도	92	92	익산시					
33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6	전	23	19	익산시					
34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8	전	37	37	익산시					
35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9	전	730	266	익산시					
36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4-23	전	14	14	익산시					
37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1	도	493	71	국토교 통부					
38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3	도	112	11	국토교 통부					
39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6	도	93	6	국토교 통부					
40	익산	황등면 황등리	745-11	도	1,430	5	익산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물건조사

공사명 : 황등 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

입력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	황등면 황등리	789	사무실	컨테이너		김봉*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				
2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1-2	단풍나무		1주	강숙*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보리수		1주						
				소나무		2주						
				화단	자연석, 철책등 포함	25㎡						
				장독대		16.8㎡						
3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1-1	기름탱크	철재	1식	임훈*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주택	조적조립	126.0㎡						
				감나무		4주						
4	익산	황등면 황등리	761-6	매실나무		4주	임훈*	익산시 황등면 황등12길 ***				
				감나무		4주						
				대추나무		1주						
				골담조		1식						
				사철나무		1주						

정읍시 고시 제2023-106호

### 정읍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에 따른 정읍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7월 14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시기동 364번지 외 1필지(364, 368-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나. 명칭 :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조곡천 들풀마당 주차타워 조성사업
- 3.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사업면적 : 2,509㎡
  - 나. 사업규모 : 주차장 신축(건축면적 : 1,776.34㎡, 연면적 1,770.49㎡, 70면)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 나. 성명 : 정읍시장(지역활력과장)
-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일부터 ~ 2024. 7.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별도붙임”
-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주차장	시기동 364번지 일원	2,390	(증)119	2,509	정읍시 고시 제2007-21호(‘07.07.04)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주차장	· 부지면적 변경 - 기정2,390㎡ → 변경2,509㎡(증 119㎡) ※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 공영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에 따라 광장역할 건축물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경계 일부는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8. 관계도서 : “계재생략”

9. 열람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63-539-5782)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합 계				2,668	2,509						
1	시기동	364	차	2,577	2,477	정읍시	-	-	-	-	주차장
2	시기동	368-2	대	91	32	정읍시	-	-	-	-	주차장

정읍시 공고 제2023-1083호

##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정읍 상평동 23-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7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평동 23-8번지 외 2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정읍 상평동 공동주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시행면적 또는 규모
  - 가. 면적 : 1,450㎡
  - 나. 규모 : 도로정비 및 개설
    - 대로3-4 L=137m, B=1.0~3.5m    · 중로2-12 L=110m, B=4.0m
    - 소로1-78 L=210m, B=1.0~3.0m    · 소로3-283 L=67m, B=4.0~6.0m(신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식회사 명현 대표 이미경
  - 나. 주 소 : 정읍시 정읍남로 1400, 상가동 103호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공시일 ~ 2026년 2월 28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계재생략”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시설 및 도로부지는 정읍시 관리청에 기부채납
9.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안전국 도시과(☎063-539-5782)
10. 열람기간 : 도보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11. 의견서 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동기한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정읍	상평	23-8	도	1,870	6		정읍시				
2	"	"	23-14	도	16	5		정읍시				
3	"	"	23-15	도	382	118		정읍시				
4	"	"	23-17	도	156	37		정읍시				
5	"	"	23-18	도	172	52		정읍시				
6	"	"	23-19	도	215	128		정읍시				
7	"	"	24-10	도	1,713	15		정읍시				
8	"	"	24-12	도	50	50		정읍시				
9	"	"	24-13	도	92	80		정읍시				
10	"	"	51	전	590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				
11	"	"	51-2	전	94	74		정읍시				
12	"	"	52-3	대	130	62		정읍시				
13	"	"	52-15	전	100	33		정읍시				
14	"	"	52-16	전	68	17		정읍시				
15	"	"	53-2	도	100	32		정읍시				
16	"	"	56-1	대	338	7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				
17	"	"	56-12	전	30	30		정읍시				
18	"	"	56-31	대	331	7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				
19	"	"	76-11	대	100	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				
20	"	"	914-2	구거	1,517	25		국 (농림부)				
21	"	"	914-5	구거	1,446	49		국 (농림부)				
22	"	"	916-3	도	147	22		국(건설부)				
23	"	"	산15-1	임	1,216	272		정읍시				
24	"	"	산15-15	임	1,638	122		정읍시				
계			24필지		12,511	1,450						